

4. 韓國水資源公社法施行令中改正令

大統領令 第13097號 1990. 9. 4 公布.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댐사용권 및 공업용수도시설 관리권”을 “댐사용권·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건설지역의 범위)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광역상수원의 상류하천 및 그 1차지류의 인근지역
2. 하수등의 오염물질이 광역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역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3조의3(교육훈련) ①공사가 법 제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규정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다양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방법 및 등록 절차
4. 교육훈련의 과정 및 방법
5. 교육훈련의 과정 및 방법
6. 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의 산정기준
7. 기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사는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의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의 대상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3.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4. 교육훈련과정별 교수과목
5. 교육훈련의 수요전망
6. 교육훈련의 수요전망
7. 기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사는 매년 두의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4(기술자원) ①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포함된 기술지원규정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술지원의 기본방향
2. 기술지원의 대상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 신기술 및 각종기준의 제정과 보급 등에 관한 기술지원내용과 그 방법
4.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의 산정기준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

음 각호의 사항의 포함된 다음연도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술지원의 목표
2. 기술지원의 대상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 기술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4. 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 기타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3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술지원에 관한 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5(교육훈련등에 관한 협의) 건설부장과이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규정 및 기술지원규정과 교육훈련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실시계획승인신청) ①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철거계획과 대체 시설의 설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항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사송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10.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한다).
11.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한한다)
12. 하수도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한다)
1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기재한 서류
-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사송달방법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준공인가) ①공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한다)

3. 용지조서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물지의 경우에는 수물용지도)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제29조제1항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 제3항”으로, “동조 제1항”을 “동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요금의 협의등”을 “요금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동조제2항 중 “물 또는 시설물”을 “물·수자원개발 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교육훈련등의 비용부담) 공사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설비의 범위안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사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을 위탁받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공공용

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산정기준에 의한다.

제36조 **중** “공업용수시설”을 “공업용수 시설등”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건설비용부담금액의 산정방법)

제14조제2항제10호 및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중**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를 “하구둑·다목적용수로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공업용수”를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용수”로 하고, 동조 2항 단서 중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하며, 동조제 2항 중 “공업용수”를 “용수”로 한다.

②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공업용수

도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과 산업기재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 **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록필의 통지) 건설부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당해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설관리권의 이전·소멸
2. 저당권의 설정·이전·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

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개정

제9조제6항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하여 이를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수도시설관리권·공업용수도시설관리등록부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로 한다.

②등록부에는 1개위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5호·제20조제1항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31조중 “공업용수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34조 제1항·제36조제3호·제37조제1항·제47조제3항·제2절제목·제53조 내지 제58조·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및 제68조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별표]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1조 제3항 관련)

공사비	요율	비고
100억원 이하	9.0% 이내	1. 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00억원 초과	8.0% 이내	2.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 팔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7.5% 이내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500억원 이하		

공사비	요율	비고
500억원 초과	7.0% 이내	<p>4. 2년이상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총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p> <p>5. 위탁 또는 수탁 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 대</p>

공사비	요율	비고
		<p>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탁 또는 수탁 수수료를 별도 가산한다.</p> <p>6. 조사·설계등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준표상의 공사비로 본다.</p>

◇ 韓國水資源公社法施行令 改正理由 ◇

韓國水資源公社法이 改正(1990. 4. 7, 法律 제4232號)됨에 따라 同法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現行規定上의 未備點을 改善·補完하려는 것임.

◇ 主 要 骨 子 ◇

- 가. 廣域上水源의 水質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地域에 建設한 下水終末處理場施設에 대하여는 公社가 運營·管理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地域의 범위를 廣域上水源의 上流河川 및 그 1次支流의 隣近地域등으로 함(令 第13條의2).
- 나. 公社가 地方自治團體 公務員·關聯事業者 및 그 從事者에 대한 上·下水道分野에 관한 教育과 技術支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教育訓練規定 및 技術支援規程을 정하고, 이에 따라 教育訓練計劃 및 技術支援計劃을 수립하도록 하며, 建設部長官이 教育訓練規程·技術支援規程 및 教育訓練計劃을 承認할 경우에는 미리 内務部長官과 協議하도록 함(令 第13條의3 내지 第13條의5).
- 다. 公社가 地方自治團體 公務員 및 關聯事業者에 대한 教育 및 技術을 실시한 경우에는 實費의 범위안에서 算定된 금액을 所要費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의2).
- 라. 맑은 물 共給推進對策의 일환으로 公社의 事業範圍에 下水終末處理場施設의 建設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國庫補助金의 支援對策範圍에 追加함(令 第38條).

<법제처 제공>